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9,901,285	20,097,039
일반회계		509,610,000	15,288,300
특별회계		160,291,285	4,808,73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51,218	31,537
	주차장특별회계	437,809	13,134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0,000	6,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3,729,778	3,411,89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43,480	46,304
	치수사업특별회계	330,000	9,9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1,989,000	1,259,6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329,721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